

2022년도 창업도약패키지 창업기업 모집공고

업력 3~7년 이내인 창업기업의 데스밸리 극복과 성장·도약을 지원하는 『2022년 창업도약패키지』에 참여할 도약기 창업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28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K-Startup 누리집을 통한 신청·접수 시 '기업인증' 절차가 올해 신설됨에 따라 사전에
①공동인증서 발급 또는 ②SCI기업실명인증 등록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 SCI기업실명인증은 등록에 수일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사전 준비를 요청 드립니다.

1 사업개요

사업목적 : 유망 기술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도약기 창업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혁신 및 제품·서비스 고도화를 지원하여 스케일업 촉진

지원대상 : 창업 후 업력 3년 이상 7년 이내인 도약기 기업
* 단, 업력 미충족 기업 중 초기단계 사업 '최우수', '우수' 판정 기업 또는 재도전 사업 '최우수' 판정 기업은 [붙임 2]의 자격 요건을 충족할 경우 '패스트트랙'으로 지원가능

지원내용 : 사업화 자금(최대 3억원, 평균 1.2억원) 및 특화프로그램



협약기간 : 협약 후 10개월 이내 ('22.5월 말 ~ '23.3월 말 예정)

선정규모 : 총 480개사 내외(일반과제 410개사, 협업과제 70개사)

< 지원트랙 및 모집분야 >

구분	모집분야					주관기관
[트랙1] 일반과제	제조·서비스 등 전 분야					18개 기관
[트랙2] 협업과제	5G (로봇, AI 등)	친환경 (저탄소, 재활용 등)	라이프스타일 (푸드, 유통, 미디어 등)	클라우드 (SaaS 등)	금융 (핀테크, 프롭테크 등)	5개 기관

* 일반·협업과제 중 1개의 트랙만 신청가능(중복신청 불가)

** 대기업별 모집분야 및 특화프로그램의 세부 지원내용은 [별첨 5]에서 확인 가능

< 주관기관별 창업기업 선정규모 >

주관기관명 (대기업 협업, 가나다 순)	창업기업 선정규모(안)	
	[트랙1] 일반과제	[트랙2] 협업과제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KT	15개사 내외
경북대학교 테크노파크	SK이노베이션	15개사 내외
부산디자인진흥원	CJ	10개사 내외
부천산업진흥원	네이버클라우드	15개사 내외
한국기술벤처재단	KB금융그룹	15개사 내외
강원도경제진흥원	410개사 내외 (경쟁률에 따라 주관기관별 선정규모 추후 확정)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서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울산경제진흥원		
인천테크노파크		
제주테크노파크		
충북대학교 기술지주 주식회사		
포항공과대학교 산학협력단 (인공지능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탄소산업진흥원		

* 일반 및 협업과제를 모두 수행하는 주관기관(음영 5개)의 경우, 1개의 트랙만 신청 가능

** 주관기관별 특화프로그램의 세부 지원내용은 [별첨 4]에서 확인 가능

□ 신청자격

- **(도약기 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이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모집공고일 기준 **창업 3 ~ 7년 이내인 자**
- **(패스트트랙 기업)** 초기창업패키지 ‘**최우수**’, ‘**우수**’ 판정 기업 또는 제도전성공패키지 ‘**최우수**’ 판정 기업 중 [붙임 2]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신청자격 세부조건 >

▶ 신청가능 업력 : 2015년 2월 28일 ~ 2019년 2월 28일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다수의 사업자등록증(개인, 법인)을 보유한 경우, 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신청자격 적합여부 결정 (**붙임 1 「창업여부 기준표」 참조하여 신청前 창업여부 확인**)
*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를 기준으로 이전에 개시한 사업자(개인, 법인)와의 창업여부 확인 필수

□ 신청(지원) 제외 대상

< 신청(지원) 제외 대상 세부조건 및 예외사항 >

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①조건 예외대상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22.3.28. 기준) >

1.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 가능한 자
2.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자
3.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또는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자,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 된 자
4.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제도전·재창업 재기지원보증’ 또는 중소기업집진진흥공단·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 자금지원’을 받은 자

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중인 자(기업)

< ②조건 예외대상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22.3.28. 기준) >

1. 국세징수법 제 105조 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 105조 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
2.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

③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자(기업)

④ 중소기업부(舊 중기청) 창업사업화지원사업,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의 창업 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로 해당 사업의 협약 완료일이 동 사업 접수마감일 보다 3개월 이상 초과하는 경우

- * 접수마감일 후 3개월 내 기 수혜사업이 종료되지 않는 경우는 신청(지원) 불가
- * 중소기업부(舊 중기청),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의 창업지원사업의 기 수혜자의 경우도 접수마감일 후 3개월 내 정상 종료·예정인 경우에는 동 사업 신청(지원) 가능
- * 지자체 지원사업은 협약 시작·종료일에 관계없이 선정 가능

⑤ 중소기업부(舊 중기청)의 ‘16~’21년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사업화지원’, ‘18~’21년 포스트팁스(POST-TIPS) 사업화 지원, ‘20년~’21년 K-유니콘 프로젝트(아기 유니콘 200 육성 사업)을 받은 자(기업)

- * 창업도약패키지 사업화지원(글로벌기업 협업 프로그램(20년 창구, 마중, 정글, 엔업), 대기업 협업 프로그램(21년 에그, 씨앗, 이웃))으로 지원받은 자(기업)는 신청 불가
- * 창업도약패키지 성장촉진 프로그램만 지원받은 자(기업)는 신청 가능

⑥ 중소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중인 자(기업)

⑦ 동 사업 주관기관 전담조직의 총괄책임자, 전담·겸직인력, 스카우터로 참여 중 (예정)인 자(기업)

⑧ 동 사업 창업기업 선정을 위한 주관기관 평가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는 자(기업)

⑨ 전담기관이 지정한 은행계좌(사업비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기업)

-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2 ①항 및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의 신고·등록이 되지 않은 자(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가상화폐 거래소업, 가상화폐 개발업, 가상화폐 거래소 투자 및 자문업 등)

⑩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임금 체불 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

⑪ 최근 1년 이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정거래행위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기업과 그 임원

⑫ 신청일 기준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가 휴·폐업 중인 자(기업)

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자

⑭ 기타 중소기업부 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의무 및 역할

- 선정자는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및 「동 사업 세부 관리기준」, 협약서 등의 사항을 준수하며,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목표 달성을 위하여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완수하여야 함
- 선정자는 전담기관(창업진흥원)과 주관기관이 요청·안내하는 자료 제출, 협약체결(설명회 등),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선정자는 협약종료 연도로부터 5년간 이력 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3 지원내용

- **지원기간** : 협약 후 10개월 이내 ('22.5월 말 ~ '23.3월 말 예정)
- **지원내용** : 사업화 자금, 대기업 및 주관기관의 특화프로그램 등

지원 구분	1. 일반과제	2. 협업과제																										
사업화 자금	<p>▶ 창업기업의 사업모델(BM) 혁신, 제품·서비스 고도화 등 소요 자금지원 (인건비, 외주용역비, 재료비 등)</p> <p style="text-align: center;">< 정부지원금 한도 및 지원기간 ></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지원한도</th> <th>지원기간</th> </tr> </thead> <tbody> <tr> <td>최대 3억원 한도(평균 1.2억원)</td> <td>협약 후 10개월 이내(~'23.3월)</td> </tr> </tbody> </table> <p>* 창업기업별 정부지원금은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p> <p>▶ 총 사업비(100%)의 구성 : 정부지원금 70% 이하 + 창업기업 대응자금 30% 이상(현금 10% 이상 + 현물 20% 이하)</p> <p style="text-align: center;">< 총 사업비 구성 ></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 rowspan="2">정부지원금</th> <th colspan="2">창업기업 대응자금</th> </tr> <tr> <th>현금</th> <th>현물*</th> </tr> </thead> <tbody> <tr> <td>총사업비의 70% 이하</td> <td>총사업비의 10% 이상</td> <td>총 사업비의 20% 이하</td> </tr> </tbody> </table> <p>* 현물은 창업기업 대표자 본인 및 사업화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기 고용 인력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보유 기자재 등으로 부담</p> <p style="text-align: center;">< 사업비 구성 예시 (정부지원금 1.5억원의 경우) ></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 rowspan="2">총사업비</th> <th rowspan="2">정부지원금</th> <th colspan="2">창업기업 대응자금</th> </tr> <tr> <th>현금</th> <th>현물</th> </tr> </thead> <tbody> <tr> <td>215백만원</td> <td>150백만원</td> <td>22백만원</td> <td>43백만원</td> </tr> <tr> <td>100%</td> <td>69.8%</td> <td>10.2%</td> <td>20.0%</td> </tr> </tbody> </table>		지원한도	지원기간	최대 3억원 한도(평균 1.2억원)	협약 후 10개월 이내(~'23.3월)	정부지원금	창업기업 대응자금		현금	현물*	총사업비의 70% 이하	총사업비의 10% 이상	총 사업비의 20% 이하	총사업비	정부지원금	창업기업 대응자금		현금	현물	215백만원	150백만원	22백만원	43백만원	100%	69.8%	10.2%	20.0%
	지원한도	지원기간																										
	최대 3억원 한도(평균 1.2억원)	협약 후 10개월 이내(~'23.3월)																										
	정부지원금	창업기업 대응자금																										
현금		현물*																										
총사업비의 70% 이하	총사업비의 10% 이상	총 사업비의 20% 이하																										
총사업비	정부지원금	창업기업 대응자금																										
		현금	현물																									
215백만원	150백만원	22백만원	43백만원																									
100%	69.8%	10.2%	20.0%																									
특화 프로그램	<p>▶ 도약기 창업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경영, 디자인, 마케팅 등 주관기관 전문성을 활용한 특화 프로그램 지원</p> <p>* 주관기관별 세부 지원내용은 [별첨 4] 참고</p>	<p>▶ 창업기업-대기업 간 공동사업화를 위한 컨설팅, 투자, 데이터·장비 등 대기업 인프라를 활용한 특화 프로그램 지원</p> <p>* 대기업별 세부 지원내용은 [별첨 5] 참고</p>																										

4 신청 및 접수

□ 신청·접수기간

- 2022년 2월 28일(월) ~ 3월 28일(월), 16:00까지

※ 유의사항

- ① 신청 마감일에는 문의 및 접수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일 2~3일 이전에 'K-startup 가입 및 사업신청'**을 미리 진행하는 것을 권장("제출완료" 후에도 신청 마감일시 전까지 수정 가능)
 - * 신청·접수 마감일 16:00 정각에 접수가 마감되며, 16:00전에 과제번호를 부여받은 과제에 한하여 접수마감일 18:00까지 작성항목 수정, 사업계획서 추가 업로드 등이 허용됨. 마감 시간 16:00 후에는 새롭게 신청접수 시작은 불가
- ② '제출완료' 버튼을 클릭해야 접수 신청이 완료됨
- ③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하고, 접수된 사업계획서 등 일체 내용 삭제 불가

□ 신청방법

- **K-startup 누리집(www.k-startup.go.kr)**을 통해 **온라인 신청**
 - 신청접수 시, K-Startup에서 ①**기업인증**과 ②**개인인증**을 실시 하므로 **사전에 홈페이지 가입 및 실명인증 실시 완료**
 - * **기업인증** : ①공동인증서(기업용) 또는 ②서울신용평가정보(SCI)를 통한 기업실명인증 후 신청이 가능하므로, 신청마감일 전 기업인증 사전진행 필수(기업 사정에 따라 3일 내외 소요될 수 있음)
 - ** **개인인증** : 서울신용평가정보(SCI)를 통한 개인 실명인증 진행(개인에 따라 3일 내외 소요될 수 있음), 특히 외국인, 미성년 등은 사전인증 필수
 - *** 온라인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별첨 6] 창업자 온라인 사업 신청 매뉴얼' 참조

※ 유의사항

- ① **사업 신청은 신청(지원) 제외 대상 여부 검토를 위해 반드시 창업기업 대표자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타인이 신청할 경우 탈락 처리**
- ② 창업기업은 사업 신청시 희망하는 **1개의 트랙(일반과제와 협업과제 중 택1)** 및 **1개의 주관기관만 선택** 가능하며, 신청한 각 주관기관의 선정평가를 통해 선정
 - * 신청 시 선택한 주관기관에서 창업기업 선정평가협약, 사업비 집행관리, 프로그램 운영 지원 (접수 마감 후 변경 불가)
 - ** 신청 시 사업계획서 상 '주관기관'과 시스템 접수 '주관기관' **동일여부 필수 확인** (K-Startup에서 직접 선택하여 저장한 주관기관과 사업계획서 상의 주관기관이 상이한 경우, **K-Startup 접수 기준으로 진행**)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는 동 사업 전용 사업계획서 양식(별첨 1, 2)을 사용, 전용 양식으로 제출하지 않을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가점 증빙서류, 아이템 도면·설계도 등 추가 제출서류는 동 사업 사업계획서 양식에 포함하여 제출

제출서류	제출방법	비고
① 사업계획서	파일 첨부	신청기간 내 온라인 입력 및 제출서류 업로드(30MB 제한)
② 동의서, 기업·신청자 정보, 일반현황	온라인 입력	
③ 기타(사업자등록증, 가점 증빙서류 등)	해당시 첨부	

* 가점 등 증빙서류는 사업 신청 시 제출하며, 미제출시 불인정

5 평가 및 선정

□ 평가절차

- 평가는 신청한 주관기관에서 2단계(서류→발표)로 진행하며, 단계별 평가접수는 해당 단계만 적용(서류평가, 발표평가 접수는 개별 산정)
 - * 신청접수 완료 후 향후 평가일정 등은 해당 주관기관에서 안내 예정

< 창업기업 선정 절차(안) >

①요건검토	②서류평가	③발표평가	④최종선정
자격기준 검토 및 서류평가 대상 확정	사업계획서(가점 포함) 평가로 2배수 선발	발표 및 일자리평가로 선정예정자 확정	최종선정 공고 및 정부지원금 안내
전담기관 및 주관기관	주관기관·대기업	주관기관·대기업 (필요시 현장확인·평가)	전담기관 및 주관기관
~'22.4월 초	~'22.4월 중	~'22.5월 중	'22.5월 말

신청기업의 자격검토는 전담·주관기관에서 상시 확인하며, 선정 이후에도 자격기준 미충족이 확인되는 경우 탈락 처리

※ 상기 일정은 신청기업의 수 등 대내외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평가방법

- ① **요건검토** : 시스템 조회 및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여 신청자격 확인
- ② **서류평가** : 제출한 사업계획서(가점 포함)를 토대로 진행하며, 발표평가 대상자(최종 선정규모 2배수 내외) 확정
 - * 서류평가 통과자를 대상으로 창업기업에 대한 창업여부 요건검토시 '창업기업 확인서' 또는 '창업기업' 임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업력 증빙서류 등 제출 요청 예정
- ③ **발표평가** : **발표평가 결과(90%)에 중소기업 일자리평가(10%)를 합산하여 선정예정자 확정**
 -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비대면으로 진행 가능
 - **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세부내용은 [붙임 5] 참조
 - *** 신청기업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의 진위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현장확인·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현장확인·평가 중 사업계획 등 허위로 밝혀질 경우 최종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평가지표

- 창업아이템의 제품·서비스에 대한 개선과제 및 방향, 성장전략, 대표자 및 기업 보유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서류·발표평가 주요내용 >

평가항목	세부내용
문제인식(Problem)	• 창업아이템 고도화 동기(문제인식)와 개선 과제 등
실현가능성(Solution)	• 창업아이템 고도화 및 차별화 강화 방안 등
성장전략(Scale-up)	• 창업아이템 사업화 및 자금조달 계획 등
팀(기업)구성(Team)	• 대표자 및 기업 보유역량, ESG 경영 실천 계획 등

< 서류평가 가점 항목 및 점수 >

구분	평가내용	가점	제출서류
가점 (최대 3점)	1) 고용·산업 위기지역 소재 창업기업 - 개인·법인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본사(점) 소재지 기준 ① 전북 군산시 ② 울산 동구 ③ 경남 창원시 진해구 ④ 경남 고성군 ⑤ 경남 거제시 ⑥ 경남 통영시 ⑦ 전남 영암군 ⑧ 전남 목포시 ⑨ 전남 해남군	1점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2) 감염병* 예방·진단·치료 관련 제품·서비스를 과제로 신청한 창업기업 [붙임 4] 참조 * 감염병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정의에 따름	1점	사업계획서 내 별도양식 작성 제출
	3) 공고일 기준 노란우산공제 가입 창업기업	1점	공제가입증서

* 가점은 1단계 서류평가 시에만 반영하며, 신청 시 증빙제출하고 미제출 시 불인정

< 서류평가 면제 대상자 안내 >

서류평가 면제 대상	비고
1) '22년 창업도약패키지 기술창업 스카우터(주관기관) 추천기업 ◆ 기술창업 스카우터 : 창업기업 발굴을 위해 주관기관에 등록된 투자 전문인력 - 주관기관 소속 스카우터로부터 1억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한 창업기업 - 투자인정 기간('21.3.29.~'22.3.28.)까지 투자계약 및 입금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서류평가 면제에서 제외 * 투자요건 등 세부 내용은 주관기관 담당자에게 문의	주관기관이 해당자(기업)에 별도 안내 예정
2) '21년 도전! K-스타트업 왕중왕전(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186호, '21.3.22.) 진출자	전담기관이 해당자(기업)에 별도 안내 예정
3) '21년 공공기술 활용 청년 기술창업 경진대회(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618호, '21.12.9.) 수상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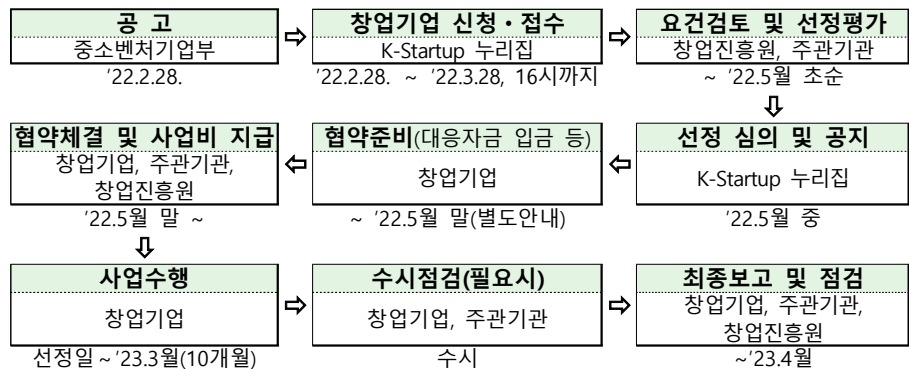
* 서류평가 면제 대상일지라도, '22년 창업도약패키지 창업기업 모집 공고에 신청접수를 완료하여야 하며, 공고문상의 신청자격 등을 충족해야함

** 서류평가 이후의 평가과정은 타지원자와 동일하게 진행하며, 서류평가 면제 대상자에 대한 별도의 선정 T/O를 두고 있지 않음

□ 최종선정

- 선정 및 예산 규모 내에서 최종 지원기업을 선정하고, 기업별 정부지원금* 배정하여 최종 확정 공고
- * 창업기업 평가결과 및 자금조달 계획의 적정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차등 지원
- 평가위원회에서 현장확인·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대해 주관기관에서 별도 현장실사를 진행할 수 있음
- * 선정평가 결과 창업기업 역량이 본 사업 운영목적 및 요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선정 예정규모 보다 적게 선발할 수 있음

□ 사업 운영일정 ※ 일정은 대내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유의사항

□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자는 1개의 지원트랙^①(일반과제, ^②협업과제 중 택 1)과 1개의 주관기관(전국 18개 기관 중 택1)을 선택하여 신청해야함
- 신청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 되거나,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내용을 허위 기재, 도용, 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될 수 있음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 등)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3년간 참여 불가 및 사업비 전액 환수 등의 제재 조치가 취해짐
- * 합의 하에 공동 작성한 동일·유사 사업계획서로 신청하거나 선정된 경우, 공동작성사 모두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한 것으로 판단하여 평가과정 중 탈락, 선정취소, 사업참여제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 동일·유사 여부의 판단은 본 건 공고에 따른 신청에만 국한되지 않고 창업진흥원이 수행하는 모든 창업지원사업에 대한 신청을 위하여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대상으로 함
- 동 사업 신청은 해당 창업기업의 대표자가 하여야 하며, 동 사업 신청자와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상의 신청자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 제외 및 탈락처리 되거나 추후 발견 시 선정 및 협약 취소할 수 있음
- * K-Startup(<https://www.k-startup.go.kr/>) 상의 동 사업 신청자, 해당 기업의 대표자,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 상 대표자는 일치하여야 함
- '22년도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정부 창업지원사업*에 중복 신청은 가능하나 1개의 지원사업만 수행 가능(타 사업 동시 수행 불가)
- * (창업지원사업) 「'22년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 내 중앙부처가 운영하는 사업화 지원 사업 중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비,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비, 마케팅비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창업자에게 지원하는 사업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함

- * 선정 완료 후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에 대한 신청자격을 재검토하여 신청 제외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 중 1인이 동 사업의 협약을 체결할 경우, 향후 동 사업 협약체결자 외의 대표자도 중기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신청이 불가할 수 있음
- 신청 마감 시간까지 **사업신청을 완료**를 한 신청자에 한하여 **평가 참여가 가능**
- 동 사업 신청 시 사업계획서 양식을 반드시 확인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한글(hwp) 및 워드(Word)양식으로만 제출 가능함**
- * 신청 시 PDF 파일로 업로드 또는 암호화된 한글·워드파일 등을 제출하여 사업계획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선정자는 전담기관이 지정한 **은행계좌(사업비계좌) 개설 필수** 및 **창업 사업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사업비 지출(회계처리)이 가능**하여야 함
- * 전담기관이 지정한 은행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의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2 ①항 및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회사로부터 계좌개설 불가 등의 **금융거래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협약체결 및 사업화 지원이 불가함**

◆ 창업지원사업에 신청하는 창업기업은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① 동 사업은 창업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 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형법”,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등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정부지원금 전액 환수 및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② 동 사업비의 부정수급을 행할 경우 **부정 사용금액을 포함하여 반환금액의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③ 사업계획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작성자(대필자)와 신청자(대표자, 창업기업) 등 관련자 전원이 **사기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④ 중소기업부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32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의, 거짓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행한 사실이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 **해당자를 고발 조치** 할 수 있습니다.

□ 평가 중 유의사항

- 접수 마감까지, 신청자격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등의 사유로 인한 **신청자격 확인 불가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가점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시 가점 부여 대상에서 제외**함
- ‘발표평가’ 및 ‘현장확인·평가’ 등 **모든 평가 과정에 신청자(대표자) 본인이 직접 참여**하여야 하며, **불참 시 평가대상 제외 및 탈락처리**되거나 추후 발견시 선정 취소 또는 협약 취소될 수 있음
- * 신청기업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에 대한 진위 여부 파악 등을 위해 필요시 현장확인·평가가 추가될 수 있음
-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통보일 기산, 휴일포함), 1회**에 한하여 평가를 운영한 주관기관에 신청 가능함
- 주관기관은 평가과정의 공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발표평가 대상자의 동의하에 **발표평가 전 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음
- 서류평가 통과자는 창업여부 확인을 위해 동 사업에 신청한 사업자로 발급받은 ‘창업기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단, ‘창업기업 확인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창업기업’임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대체 할 수 있음
- * 업력 및 창업기업 확인 기준 관련 서류(총사업자등록내역, 내역 상 '계속' 중인 모든 사업자등록증, 폐업사실증명원, 창업여부 확인서(예비창업자용, 창업기업용), 주주명부 등)

□ 선정 후 유의사항

-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 중소기업부(창업진흥원 등)의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선정 이후라도 선정자의 신청자격 및 사업계획 유사성 등을 재확인하여 위배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을 취소**하고, 사업비 환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창업진흥원과 주관기관은 선정된 창업기업의 사업비 횡령, 편취 등과 같은 용도 외 사업비 집행으로 인한 환수조치 발생 시, 채권추심 등의 행정행위를 취할 수 있음
- 정부지원금은 창업기업의 대용자금 납부 및 협약체결 후, 지급되며 협약체결 전 창업기업이 정해진 기한 내에 **대용자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협약이 취소될 수 있음**
- 정부지원금과 대용자금(현금)은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운영·관리됨
- 현물 투입이 있을 경우 그 증빙자료를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동 사업의 **수시·최종 점검 결과에 따라 사업지원 중단 또는 정부지원금 환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협약기간 내 **대표자 변경 시 협약취소**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사업기간 중 **대표자**가 구속되어 그 기간이 2주 이상 유지되어 **부재가 발생하는 경우**, 관련 지침에 따라 **사업선정취소, 협약 해약, 제재 및 환수조치** 될 수 있음

□ **기타 유의사항**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 지침 및 동 사업 세부관리기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기준 등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동 사업 신청자에게 있음
- 창업중심대학에서 지원하는 창업도약패키지 창업기업 모집공고는 별도로 진행할 예정으로 지원내용, 의무사항, 선정규모 등 세부 지원사항은 동 사업과 상이할 수 있음
- * 자세한 사항은 [붙임6] '창업중심대학 창업사업화 지원개요' 참조

7

기타사항

□ **온라인 사업설명회**

- (개최일정(안)) '22. 3. 8.(화) 16시 예정
- (접속링크) <https://www.youtube.com/c/창업진흥원kised>
- * 창업진흥원 유튜브 채널

□ **사업 신청 문의**

- (신청·접수 시스템(K-Startup) 관련 문의) 국번없이 1357
- (사업 관련 문의) 주관기관 담당자

No	지역	지원트랙	주관기관	연락처
1	서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과제 • 협업과제(KB금융그룹) 	한국기술벤처재단	02-958-6692
				02-958-6607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과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02-2095-1743
				02-2095-1752
3	경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과제 • 협업과제(KT)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070-4163-6899
				070-4164-8953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과제 • 협업과제(네이버클라우드) 	부천산업진흥원	032-716-6510
				032-716-6511
5	인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과제 	인천테크노파크	032-250-2153
				032-250-2157
6	강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과제 	강원도경제진흥원	033-749-3330
				033-749-3366
7	충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과제 	서원대학교 산학협력단	043-299-8692
				043-299-8693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과제 	충북대학교 기술지주(주)	043-249-1489
				043-249-1492

No	지역	지원트랙	주관기관	연락처
9	대전	• 일반과제	한국수자원공사	042-629-2524
				042-629-2509
10	광주	• 일반과제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062-610-9516
				062-610-9512
11	제주	• 일반과제	제주테크노파크	064-720-3054
				064-720-3073
12	전북	• 일반과제	한국탄소산업진흥원	063-219-3678
				063-219-3675
13	대구	• 일반과제 • 협업과제(SK이노베이션)	경북대학교 테크노파크	053-939-6196
				053-939-6197
14	경북	• 일반과제	포항공과대학교 산학협력단(인공지능연구원)	054-279-5622
				054-279-5623
15	부산	• 일반과제 • 협업과제(CJ)	부산디자인진흥원	051-950-1222
				051-950-1241
16	울산	• 일반과제	울산경제진흥원	052-710-5903
				052-700-7897
17	경남	• 일반과제	한국세라믹기술원	055-792-2766
				055-792-2772
18		• 일반과제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055-291-9356
				055-291-9357

【붙임 1】 창업여부 기준표

창업여부 기준표				
신청기업 구분	상세 구분		창업여부	
개인기업	창업(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		창업 기본요건	
	타인으로부터 상속/증여	동종 사업 개시	창업아님	
		이종	창업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	창업아님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이종창업	-	창업
		동종창업	폐업 3년 초과 폐업 3년 까지 부도/파산 - 2년 초과 부도/파산 - 2년 까지	창업아님 창업 창업아님
기존 법인사업자 유지 또는 폐업	-	창업		
법인기업	창업(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		창업 기본요건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이종창업	-	창업
		동종창업	폐업 3년 초과 폐업 3년 까지 부도/파산 - 2년 초과 부도/파산 - 2년 까지	창업아님 창업 창업아님
			동종전환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이종창업	-	창업
		동종창업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 또는 최대주주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내이면서 최대주주 아님	창업아님 창업
	자회사 여부	법인주주임원 포함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하면서 최대주주	창업아님	
	조직변경	동종유지 이종	창업아님 창업	
	기존 법인사업자 유지 또는 폐업	-	창업	

※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 양도기업(기존 개인사업자) 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인 창업기업(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창업여부 판단)이고, 양도·양수기업 간 대표자가 동일하여야 함

※ 동종의 범위 : '한국표준산업분류(제10차)'를 기준으로 세세분류(코드번호 5자리)가 모두 일치하면 "동종"

※ 창업지원법 시행령 부칙 제2조(창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 영 시행(2020.10.8.)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창업자로서 영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을 때까지는 창업자로 인정 - "개인사업자 설립일이 '20.10.8. 이전이면서, 다른 장소에서 이업종의 개인사업자를 설립"한 경우 "창업"으로 판단

【붙임 2】 초기-도약 사업간 패스트트랙 자격기준

초기-도약 사업간 패스트트랙 자격기준

※ 패스트트랙 해당 사업

구분	해당사업	자격 요건
초기	'19~'21년 초기창업패키지(추경 포함)	'최우수, 우수' 판정기업
재도전	'19~'21년 재도전성공패키지(추경 포함)	'최우수' 판정기업

※ 패스트트랙 해당 기업 자격 요건

구분	세부 자격 요건	증빙 서류
기본	① 창업도약패키지 공고일 기준 - 초기창업패키지 최종평가 '최우수', '우수' 판정 기업 - 재도전성공패키지 최종평가 '최우수' 판정 기업 * 단, 판정 당시의 대표자, 기업이 동일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 ** 공고 마감일 기준으로 사업수행을 완료하고, 성과평가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21년 사업 참여기업의 경우 신청은 가능하나 추후 '21년 성과평가 결과가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선정에서 제외됨	- 증빙자료 불필요(창업진흥원 확인)
	② 공고일 기준 고용인원 5인 이상 기업	- 공고일 기준 4대 보험 사업장 가입 이력 및 가입자명부(대표자 제외)
필수 1개	① 공고일 기준 고용인원 10인 이상 기업	- 공고일 기준 4대 보험 사업장 가입 이력 및 가입자명부(대표자 제외)
	② 연 매출액 10억원 이상 기업(*'21년 결산기준)	- 재무제표(손익계산서(필수)),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세금계산서 등
	③ 해외현지법인 또는 지사를 설립한 기업	- 해당 국가에서 발급한 법인등록증 또는 외국인회사 등록증(영업허가증) 등
	④ 공공연구기관 또는 대기업 등으로부터 기술을 도입하거나 공동사업화 추진 및 PoC 완료 기업	- 양도, 실시권 허락, 라이선싱 계약, 합작투자 또는 인수 합병, 공동연구 개발 등 - 대기업, 중견기업 등과의 업무협약서 등 협업 관련 증빙

* 증빙자료는 1단계 서류평가 통과 시 주관기관 별도 안내에 따라 해당자만 제출

** 성공판정 당시의 대표자명과 기업명이 상이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붙임 3】 지원제외 대상 업종

지원제외 대상 업종

No	대상 업종	코드번호 세세분류
1	일반유희주점업	56211
2	무도유희주점업	56212
3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49
4	그 밖에 1~3에 준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kssc.kostat.go.kr) 참고

【붙임 4】 감염병 예방·진단·치료 과제 가점 자격기준

**감염병 예방·진단·치료 관련 제품·서비스를
과제로 신청한 창업기업 가점 자격기준**

※ 가점자격기준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에 해당하고 아래 제시된 한국표준산업분류*와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창업기업

* 업종코드 세분류(4자리) 일치 시 가점으로 인정. 단, 법정감염병에는 해당하나 업종분류코드 불일치 시 서면 평가위원회에서 가점 인정 여부를 결정

<감염병 예방·진단·치료 관련 업종코드>

No	대상 업종	코드번호 세세분류
1	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	27112
2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21102
3	완제 의약품 제조업	21210
4	한약약품 제조업	21220
5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27199
6	화학 살균·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	20321
7	생물 살균·살충제 및 식물보호제 제조업	20322

*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kssc.kostat.go.kr)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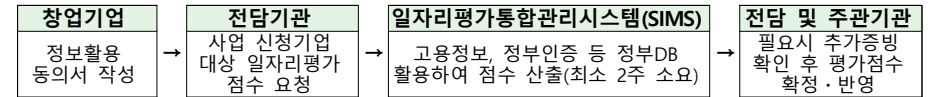
【붙임 5】 일자리평가 평가항목

일자리평가 평가항목

1. 개요 : 일자리를 창출하고, 근로여건을 개선하는 일자리 우수기업을 정부지원사업에 우대선정하기 위해 도입
2. 절차 : 기업의 사용자지표 데이터를 일자리평가 시스템에서 확인 및 검증하여 점수 제공(발표평가 총점의 10% 반영)

*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별도 제출서류 불필요

<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절차 >



3. 평가항목 * 평가항목은 공고일 기준으로 평가(단, 'I.일자리 양'은 '20년 결산 대비 공고일 기준)

구분	평가분야	평가항목	배점한도	비고			
I. 일자리 양	고용증가	가.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규모	70	가. 항목(고용보험 가입자 증가)과 나. 항목(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율)을 각각 평가한 후 더 높은 평점을 반영			
		나.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율					
II. 일자리 질	성과공유	가. 미래성과공유 협약 (+15)	30	배점한도 내에서 평가항목별 평점 합산 반영			
		나. 성과급 지급 (+15)					
		다. 임금수준 상승 (+15)					
		라. 우리사주제도 운영 (+15)					
		마.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 (+15)					
III. 고용질서 준수	법령준수	가. 고액·상습 임금체불 (-10)	-20				
		나.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10)					
		가. 근로시간 단축 (+10)			10	배점한도 내에서 평가항목별 평점 합산 반영	
나. 정주여건 개선 (+5)							
다. 가족친화인증 (+5)							
라. 청년친화강소기업 (+5)							
마. 노사문화우수기업 (+5)							
IV. 가점	근로환경	바. 인재육성형중소기업 (+5)	-10~100	가점포함 최대 100점			
		사. 인적자원개발우수기업 (+5)					
		아.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5)					
		자. 현장실습 선도기업 (+5)					
		차.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우수활용기업 (+5)					
		카. 존경받는기업인이 대표로 있는 기업 (+5)					
		타. 벤처스타트업 아카데미(+5)					
		합 계					

※ 성과급 지급, 임금수준 상승, 우리사주제도 운영,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항목은 사업 신청 마감일 이전까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성과공유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에 대해 점수 부여

【붙임 5 - 별표】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평가항목별 개요 및 문의처

평가항목	내용 및 문의처
미래성과공유 협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요) 중소기업이 근로자와 성과급 등을 통해 경영이익을 근로자와 공유하겠다고 사전 협약하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성과공유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 (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055-751-9825), https://smes.go.kr/sanhakin
성과급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요)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기업의 목표 달성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하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성과공유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 (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055-751-9825), https://smes.go.kr/sanhakin
임금수준 상승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요)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근로자의 해당연도 평균임금 증가율이 직전 3개 연도 평균임금증가율의 평균보다 높은 수준으로 임금을 지급하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성과공유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 (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055-751-9825), https://smes.go.kr/sanhakin
우리사주제도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요)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전체'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경제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기업 또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하에 근로자하여금 자기회사의 주식 또는 지배회사의 주식을 취득, 보유하게 하는 제도를 운영하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성과공유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 (문의처) 한국증권금융 우리사주지원센터, https://esop.ksfc.co.kr
사내(공동) 근로복지기금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요)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사용하기 위한 사내(공동) 근로복지기금 법인을 설치하고 기금을 운영하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성과공유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 (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055-751-9825), https://smes.go.kr/sanhakin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요)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특정 임직원을 대상으로 자기주식을 미리 정해진 가격에 따라 일정기간 내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를 운영하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성과공유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 (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055-751-9825), https://smes.go.kr/sanhakin
내일채움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요) 중소기업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부금에 복리이자를 더하여 5년이상 장기 재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공제제도 (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1588-6259, https://www.sbcplan.or.kr/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요) 청년 근로자의 장기재직과 목돈 마련을 위해 청년근로자, 기업, 정부가 공제부금을 적립하고 청년근로자가 5년 이상 재직하면 적립금+복리이자 전액을 청년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공제제도 (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1588-6259, https://www.sbcplan.or.kr/
근로시간 단축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요) 근로시간 조기단축을 시행한 기업으로서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문의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평가항목	내용 및 문의처
정주여건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요) 중기부-국토부(LH)가 공급하는 '중소기업 재직자 전용 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부지를 제공한 기업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044-204-7448)
가족친화인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으로부터 가족친화 인증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 (문의처) 한국건강가정진흥원(02-6309-9042), http://www.ffsb.kr
청년친화강소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청년친화 강소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 (문의처) 한국고용정보원, http://www.work.go.kr/smallGiants
노사문화우수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가족친화 인증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 (문의처) 노사발전재단 (02-6021-1061), https://www.nosa.or.kr
인재육성형중소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18조의2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 (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055-751-9825), https://smes.go.kr/sanhakin
인적자원개발우수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요)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제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 (문의처) 한국산업인력공단 (1644-8000), http://www.hrdkorea.or.kr
안전보건경영시스템 (KOSHA 180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요) 안전보건경영체제 및 활동이 일정수준 이상인 기업으로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18001) 인증을 받은 기업 (문의처) 안전보건공단 (052-703-0598), http://www.kosha.or.kr
현장실습 선도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요) 직업계고 현장실습 참여 기업 중 고졸채용실적, 안전대책 마련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업체를 '현장실습 선도기업'으로 인정 (문의처) 사업장 소재지 시·도 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우수활용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요) 중소기업 복지플랫폼을 통해 근로자에게 복지포인트를 지급하여 근로자 복지 향상에 기여한 우수 복지 기업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일자리정책과 (044-204-7448) 대한상공회의소 회원협력팀 (02-6050-3881) 복지플랫폼 콜센터(1588-1600)
존경받는기업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요) 성과공유, 인재육성 등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하는 "혁신"과 "상생"의 기업경영을 적극 실천함으로써 우수한 경영성과와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여 국민 경제에 기여하는 모범 중소기업인 (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력양성팀 (055-751-9825)

창업중심대학 창업사업화 지원개요

□ 사업목적

- 지역 청년창업 확산을 위한 거점 역할 수행을 통해 예비-초기-도약으로 이어지는 성장단계별 (예비)창업자 발굴·육성 강화
- * 창업중심대학은 예비, 초기, 도약패키지 주관기관 역할을 동시 수행하는 기관이며, 창업중심대학 창업기업 모집공고에 따라 지원 대상, 지원내용 등이 기존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예비, 초기, 도약패키지) 지원사항과 상이 할 수 있음

□ 지원대상

- 예비창업자부터 7년 이내 창업기업(창업중심대학 사업별 별도 모집예정)
- 일부 T/O는 권역 내 (예비) 지역기업·청년 창업가에 배정 예정

구분	창업중심대학	예비창업패키지	초기창업패키지	창업도약패키지
지원대상	예비창업자 ~7년 이내	예비창업자	창업사업 개시일 ~ 3년 이내	창업 3년 ~ 7년 이내
지원규모 (1개 주관기관)	510개(85개)	240개(40개)	150개(25개)	120개(20개)

□ 지원내용

- (사업화 자금 지원) 시제품 제작, 지적권 취득,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 지원(각 사업별 지원금액 상이)
- (지원 프로그램) 각 사업별 특화(기본) + 자율 프로그램을 통한 지원

기본	▶ 예비, 초기, 도약 패키지사업별 기본 프로그램 지원		
	예비창업패키지	초기창업패키지	창업도약패키지
	• 1:1 전담 멘토링제 • 창업 교육	• 선정기업 전용 프로그램 • 투자유치 원스톱상담창구	• 도약기 창업기업 대상 특화 프로그램
자율	▶ 기관별 특성을 반영하여 '기업가 정신 촉진' 관련 자율 프로그램 지원(창업중심대학별 프로그램 상이)		
	창업교류 협력	창업문화 확산	창업역량 강화
	• 권역 내 타 대학 등과 협업 프로그램 운영	• 청년-재창업 인식개선을 위한 창업 행사 개최 등	• 전문 창업강좌, 컨설팅 등 교육 및 멘토링 운영

□ 창업중심대학 지정현황(6개)

권역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강원권	대경권	동남권	합계
지정현황	1	1	1	1	1	1	6
기관명	한양대	호서대	전북대	강원대	대구대	부산대	

* 창업중심대학 창업기업 모집 문의를 상반기 중 모집공고를 통해 별도 안내 예정